

## 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방역수칙 변경 안내(수정)

(‘22.7.20. 중수본 요양병원·시설 대응팀)

### □ 추진배경

- 7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, 요양시설도 집단감염 및 선제검사 양성율 증가 등 방역상황 변화
- 이에,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\*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강화

\* 적용시설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

### □ 변경사항

- 종사자 선제검사
  - 돌파감염,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**예방접종·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 전면 시행**
  - \* (現)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+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→ (변경)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
  - 유증상자, 휴가 복귀자 등 **필요 시 자가검진(RAT) 추가 실시**
- 외부 접촉
  - ① **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외박 금지**, ② **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** ③ **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 보호센터에 한해 허용**

### < 방역수칙 변경 내용 >

구분	현재	변경(7.25~)
선제검사	종사자	• <b>주 1회 PCR</b> *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,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
	신규입소자	• <b>입소시 1회 PCR, 음성 확인시까지 격리</b> *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
외부접촉	면회	• <b>접촉면회 허용</b> * 방역수칙 준수
	외출·외박	• <b>허 용</b>
	외부 프로그램	• <b>허 용</b> * 전체 장기요양기관
		• <b>주 1회 PCR</b> *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* 유증상 등 필요 시 RAT 추가검사  (좌 등)
		• <b>비접촉 대면 면회</b> * 접촉면회 금지  • <b>필수 외래진료만 외출·외박 허용</b>  • <b>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</b> *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, 호흡기 증상 확인,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

### □ 적용시기 : '22.7.25(월)~, 별도 안내 시까지

\*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